

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
이 기 동 의원입니다.

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

○ 안 제3조 중

- “포함하여”를 “포함한”으로,

- “수급계획을”

“수급에 관한 중·장기계획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”

○ 안 제7조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“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
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
기간으로 한다.”로

○ 안 제8조 중

- “이를 도보존묘지등으로”를 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이를”로 한다.

이상으로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 제안을 마치
겠습니다.

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정안	수정안
<p>제명 :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</p>	<p>제명 : 현행과같음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현행과같음)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장사시설"이라 함은 묘지·화장장·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. 2. "평장"이라 함은 시계 및 유관을 제하에 배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·비석등도 지상에 묻히려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 	<p>제2조(현행과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) 2. ()
<p>제3조(묘지등의 수급계획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묘지·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계획(이하 "묘지등수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화장·납골의 확산과 장사문화 개선지원 2. 주민의 의견전환을 위한 교육·홍보활동의 전개 3.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<p>②시장·군수는 도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종·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	<p>제3조(묘지등의 수급계획) ①----- -----포함한----- -----수급에 관한 종·장기계획(이하 "묘지등수급계획"이라 한다)은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같음) 2. () 3. () <p>② ()</p>
<p>제4조(납골시설의 설치장소) 납골묘·납골당 및 납골당 등 납골시설(공설납골묘 및 종교단체·계단법인)이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)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로·침도·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,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,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. 토지나 제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할 시장·군수가 지역 여건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	<p>제4조 (현행과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) 2. ()
<p>제5조(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) 분묘·침수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등 묘지등의 설치제한 지역은 사·군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5조 (현행과같음)</p>

제정안	수정안
<p>제6조(보조표지의 사전판매 등) 공선표지의 수급을 위하여 표지의 사전판매 등을 이용하는 요건은 시·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보존표지심사위원회 구성) ① 충청북도보존표지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7조 ①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,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등에 조예가 깊은 자, 관련 기관·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② (*)</p>
<p>(신설)</p>	<p>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
<p>제8조(보존표지등의 지정기준) 도지사는 도내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표지등에 관하여는 이를 도보존표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보존표지 또는 도보존표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	<p>제8조(보존표지등의 지정기준) ----- 는 도보존표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등-----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향토사적·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표지 또는 분묘 2. 애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표지 또는 분묘 3. 지역발전에 힘쓴 공로가 있거나 다수 주민의 수모대상이 되는 자의 표지 또는 분묘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*) 3. (*)
<p>제9조(도민의 보조) 도지사는 도내 공립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위치·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·군에 보조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	<p>제9조(현행과 같음)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선화장장 또는 공선납골시설의 설치 및 개·보수 2. 공선·공동표지의 재개발·공원화사업 3. 시·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4. 인접 시·군간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 5.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전개 등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*) 3. (*) 4. (*) 5. (*)
<p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